

2008. 10. 13 ~ 10. 22

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08. 10. 2.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8. 10. 7.

## 2. 예산안 규모(군전체) - (사업명세서 P3)

### 가.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 정 액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률
계	355,928,820	349,796,043	6,132,777	1.75%
일반회계	298,488,615	292,355,838	6,132,777	2.10
특별회계	57,440,205	57,440,205	0	0.00

-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1억 3,277만 7천원이 증액(1.75%)된 3,559억 2,88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예산안은 2,984억 8,86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3,277만 7천원이 증액(2.10%)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안은 574억 4,020만 5천원으로 증감액이 없음.

## 나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P21)

(단위:천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98,488,615	292,355,838	6,132,777		2.10%
지	방	세	수	입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지	난	년	도	수	입
세	외	수	입			
	경	상	적	세	외	수
	재	산	임	대	수	입
	사	용	료	수	입	
	수	수	료	수	입	
	사	업	수	입		
	징	수	교	부	금	수
	이	자	수	입		
	임	시	적	세	외	수
	재	산	매	각	수	입
	순	세	계	잉	여	금
	이	월	금			
	부	담	금			
	잡	수	입			
지	방	교	부	세		
조	정	교	부	금	및	재
보	조	금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 3) 일반회계(세출) - (사업명세서 P12)

(단위 : 천원)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증감률
계	298,488,615	292,355,838	6,132,777	2.10%
총무위원회	148,088,970	147,841,225	247,745	0.17
운영위원회	1,077,154	1,075,154	2,000	0.19
산업건설위원회	149,322,491	143,439,459	5,883,032	4.10
경 제 과	16,519,291	16,040,321	478,970	2.99
산림환경과	23,457,685	23,844,385	△386,700	△1.62
건 설 과	37,243,071	35,075,071	2,168,000	6.18
도시건축과	22,979,268	19,969,268	3,010,000	15.07
재난안전관리과	8,292,391	7,472,391	820,000	10.97
농업기술센터	32,156,283	32,363,521	△207,238	△0.64
상하수도사업소	7,749,295	7,749,295	0	0.00
거창사건관리소	925,207	925,207	0	0.00

### Ⅲ. 세출예산 검토의견

#### 【경 제 과】 (사업명세서 P127~131)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6,519,291	16,040,321	478,970	2.99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472,660	472,660	0	0.00
	주차장관리	642,850	642,850	0	0.00

-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 4,032만 1천원 보다 4억 7,897만원이(2.99%) 증액된 165억 1,92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편성하려는 것임.

#### 1. 석강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p.128) 7,000만원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이 현재 농공단지 지정승인 예정으로 있어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실시 설계비를 우선 금회추경에 예산편성 하려는 것임.

##### - 사업개요

- 위 치 : 가조면 석강리 66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7~2010
- 총사업비 : 2,334백만원(국비 890, 도비 64, 군비 1,380)
- 유치업종 : 식료품, 1차금속산업 등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사고이월의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p.130)

1억8,230만원

○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유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비용경감 및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코자 하는 필요사업임

- '0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경사업신청요구(지식경제부→지자체)→ 거창군 사업계획서 제출(2008. 9. 26) → 경상남도 → 지식경제부 ⇒ 지원사업확정 통보(지식경제부 → 지자체) : 10월20일 경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2
- 사업비 : 176,000천원(국비 132,000 도비 22,000 군비 22,000)
- 사업대상 :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살롬의 집, 재가노인지원센터
- 사업내용 : 태양열 에너지시설

★ 지원사업확정과 동시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임

## 3.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p.131)

2억1,177만원

○ 이 사업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에 대하여 적자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하는 사업으로,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이 많은 비수익노선 운행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임

○ 당초예산에 261,172천원(도비 130,586, 군비 130,586) 편성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특별지원금이 172,720천원과 도비보조금 19,525천원이 추가지원이 있어,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담 비율(50%)에 따라 군비 19,525천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임.

**【산림환경과】** (사업명세서 P135~141)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23,457,685	23,844,385	△386,700	△1.62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17,672,988	17,672,988	0	0.00

○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8억 4,438만 5천원 보다 3억 8,670만원(△1.62%)이 감액된 234억 5,76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삼각사유로는 호국공원조성사업비(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확보액 15억원 중 도비보조금 7억원 미확보에 따른 전액 삭감 및 타 사업비 증감에 따른 것임.

**1. 도시숲가꾸기 토지매입비(p.138)**

**27억원**

○ 이 사업은 죽전도시숲과 충효회관 주변을 정비하여 청소년과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도시 숲 (57,000m<sup>2</sup>, 5,965백만원)을 조성하는 사업임

○ 금년도 당초예산 시설비에 29억9,76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토지매입비로 27억원을 목 변경하여 금회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는 받았으나, [경상남도에서 조건부승인(2008. 9. 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의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

○ 이 건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대상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토지취득에 있어 시·군의 경우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같은 항 제13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으로 두는 등 13가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1992. 7. 18. 거창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32호)를 하였고, 같은 해 8. 4. 거창 도시계획시설(죽전근린공원)에 대하여 지적승인고시(거창군 고시1992-15호)한 후, 금년도 7. 31.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를 하면서 공원결정조서에서 죽전공원에 대하여 시설의 세분에서 근린공원시설, 면적을 당초 57,000㎡에서 620㎡를 감한 56,380㎡,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현재 공원조성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인가나 허가,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이건의 경우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사업지가 근린공원 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공원조성계획수립단계에 있고, 달리 공원조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의 인·허가나 사업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의 예외규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토지매입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도공원조성계획을 수립위하여 이 사업 대상지인 죽전 근린공원내 사유지매입(2필지, 1,884㎡, 113,040천원)코자 제133회 임시회시(2006. 11. 1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2. 호국공원 조성사업(주민생활지원과 소관) (p.138)                      △7억원**

- 이 사업은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8억원의 예산으로 충혼탑, 봉안각,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5억원 중 도비 7억원을 보조받는 것으로 예산편성 한 후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 (사업명세서 P145~149)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37,243,071	35,075,071	2,168,000	6.18%
특별회계 (댐 주변지원사업)	572,655	572,655	0	0.00%

○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0억 7,507만원 1천원보다 21억 6,800만원이(6.18%) 증액된 372억 4,30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도비보조금에 의한 예산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편성하려는 것임.

《주요예산편성내역》

**1.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민간자본보조→시설비) (p.149) 3,425만9천 원**

○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건축과】** (사업명세서 P153~155)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22,979,268	19,969,268	3,010,000	15.07
특별회계	기반시설	427,452	427,452	0	0.00

○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9억 6,926만 8천원 보다 30억 1만원이 증액된(15.07%) 229억 7,92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예산으로 로타리~거창교간 도로정비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편성하려는 것임.

**1. 로타리~거창교간 도로정비공사 (p.153) 20억원**

○ 이 사업은 거창읍 로타리~거창교구간의 옥외광고물 및 시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등으로 도로를 특색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자체 신규사업임.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경우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9. 9월까지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해 보이고 사고이월 될 우려도 있어 보이므로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는 지금시점에서 사업비를 확보 하여야 하는 사유와 사업내용,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을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 걱정(2008. 10. 2)

【재난안전관리과】 (사업명세서 P159~160)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8,292,391	7,472,391	820,000	10.97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7,239만 1천 보다 8억 2,000만원이(10.97%) 증액된 82억 9,2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정장천 하천정비공사 사업비 8억원으로, 거창읍 정장리 내 강우시 정장천 하류부 농경지의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하천을 개·보수코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 받아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음.

**【농업기술센터】** (사업명세서 P163~171)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32,156,283	32,363,521	△207,238	△0.64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8,733,573	8,652,090	0	0.00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3억 6,352만 1천원보다 2억 723만 8천원이(△0.64%) 감액된 321억 5,62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퇴비지원사업으로(농업지원과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비 666,49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356,303천원이 감액(농협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중 284,40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액하여 편성 하려는 것임.

## 【상하수도사업소】

### ◆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책)

####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지 출			비고 (A-B)
2회추경 예산안(A)	기 정 예산액	증감 율		2회추경 예산안(B)	기 정 예산액	증감 율	
7,764,716	7,764,716	0	계	7,764,716	7,764,716	0	0
2,469,306	2,469,306	0	영 업	3,435,707	3,435,707	0	△966,401
1,034,941	1,034,941	0	영업외	158,000	158,000	0	876,941
1,100,000	1,100,000	0	고정부채수입	-	-	0	1,100,000
2,640,400	2,640,400	0	자본잉여금	-	-	0	2,640,400
520,069	520,069	0	기타자본적	-	-	0	520,069
			가동설비자산	3,411,809	3,351,809	1.8	△3,411,809
			고정부채상환	302,400	302,400	0	△302,400
			예비비	456,800	516,800	△11.6	△456,800

-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 없이 구화장장 주변 상수도 공급공사(14가구)를 위하여 예비비 60,000천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음.

◆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책)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

수 입			과 목	지 출			비고 (A-B)
2회추경 예산안(A)	기 정 예산액	증감 율		2회추경 예산안(B)	기 정 예산액	증감 율	
20,560,336	20,560,336	0	계	20,560,336	20,560,336	0	0
496,987	496,987	0	영 업	1,707,788	1,707,788	0	△1,210,801
1,266,901	1,266,901	0	영업외	10,000	10,000	0	1,256,901
17,389,355	17,389,355	0	자본잉여금	0	0	0	17,389,355
			가동설비자 산	3,438,355	3,438,355	0	△3,438,355
			비가동자산	14,979,000	14,979,000	0	△14,979,000
			고정부채상 환	32,000	32,000	0	△32,000
1,407,093	1,407,093	0	기타자본지 출	40,000	40,000	0	1,367,093
			예비비	353,193	353,193	0	△353,193

-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 없이 방류수질 공개용 전광판 설치비 150,000천원 감액하여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 하수도공기업회계에서 구축물의 시설비 증액 150,000천원 은
  -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유지보수사업비로 제1회추경시 400,000천원

을 확보하였으나, 2008. 7. 7 가조면에 내린 시우량 64mm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수가 역류하고 농경지침수피해를 입은 가조면 마상리 일원의 배수개선사업에 233,000천원을 집중사용하게 되어, 거창읍 시가지와 면단위 마을하수도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150,000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2007년도 동일항목의 예산편성액이 702,885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금년예산편성 요청한 851,473천원은 가조면 마상리일원의 배수개선사업에 투입된 233,000천원을 고려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기계장치의 시설비 감액 150,000천원 은

- ▶ 당초 거창읍 시가지 가로변에 거창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공개와 재해대책, 군정홍보를 겸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금년5월 개정되면서 가로변 옥외 전광판 설치는 불허하고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기한 도래 시 철거토록 되어 관련부서의 신규설치 불가의견과, 홍보효과 증진을 위해 내년에 군청 옥상에 대형전광판(8억원 소요)을 설치로 계획 변경되어, 금번 가로변전광판 설치사업비 15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감액된 사업비를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비로 변경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